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민방위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민방위 경보전과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,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「민방위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7639호, 2020.12.22. 공포, 2021.6.23. 시행)됨에 따라, 인증의 절차, 방법 및 인증취소 사실의 공표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,

법 제33조의2제1항의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고, 인증기준을 공표하여 경보단말장비의 호환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 명확화(안 제55조의3제1항)

- 1)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대상을 경보전과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로 명확하게 함

나. 경보단말장비 인증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(안 제55조의3제2항)

- 1) 전문성과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인증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경보단말장비의 보안성·호환성·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

다. 정보단말장비 인증의 절차,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5조의3 제3항부터 제5항까지)

- 1) 법 제33조의2제7항에서 위임한 정보단말장비의 인증신청, 인증심사, 인증결과 통보 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
- 2) 인증신청자가 인증기관에 협조해야할 사항을 규정

라. 인증제품 인증취소 시 취소 사실 공표(안 제55조의3제6항)

- 1)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부적합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

마. 타 법 개정사항 반영(안 별표 3의2)

- 1) 「항공법」이 「공항시설법」등으로 분법(2017.7.30)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

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5조의3(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)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를 말한다.
-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.
- ③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(이하 “인증신청자”라 한다)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보단말장비를 시험·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즉시 이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며,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증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인증신청자는 경보단말장비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, 경보단말장비 시험 및 현장실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이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절차, 인증심사 방법 등 인증제도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3의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항공 여객을 위한 시설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[별표 3의2]

경보전파 대상 건축물(제55조의2제1항 관련)

1. 운수시설: 다음 각 목의 시설
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- 나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
- 다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(驛舍) 및 역 시설
- 라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항공 여객을 위한 시설
- 마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3)에 따른 여객이용시설

2. 대규모점포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
3. 영화상영관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(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5조의3(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)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정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를 말한다.</u> <u>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.</u> <u>③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(이하 “인증신청자”라 한다)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보단말장비를 시험·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</u>

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즉시 이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며,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증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인증신청자는 경보단말장비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, 경보단말장비 시험 및 현장실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이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절차, 인증심사 방법 등 인증제도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별표 3의2]

1. 운수시설: 다음 각 목의 시설
라. 「항공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

[별표 3의2]

1. 운수시설: 다음 각 목의 시설
라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항공 여객을 위한 시설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	
연 락 처	(044) 205 - 4383